

의안번호	2200639
의 퇴 인	정을호 의원
회 답 일	2024.07.03.
추계번호	24C0939

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

【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】



국회의산정책처
National Assembly Budget Office

I. 재정수반요인

연번	조·항(조제목)	주요내용	비고
1	안 제11조 (대출금리)	(제1항) 취업 후 상환 학자금대출의 금리는 매 학기 대출이 시작되기 전까지 교육부장관이 결정하여 고시한다. (제2항) 제1항의 결정을 함에 있어 교육부장관은 매년 물가 상승률과 실질금리, 대출원리금의 상환율 등을 고려하고 재원 조달 금리를 감안하여야 한다. 이 경우 그 금리는 「국채법」에 따라 5년을 상환 기한으로 하는 국채의 매 학기 시작 직전 3년간 평균수익률의 <u>110퍼센트</u> 를 초과하여서는 아니 된다.	의무규정

II. 미첨부 근거 규정 및 상세 사유

1. 근거 규정

연번	조·항(조제목)	미첨부 근거 규정
1	안 제11조 (대출금리)	제3호: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·권고적인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

2. 상세 사유

- 개정안은 취업 후 상환 학자금대출의 금리의 상한을 “국고채(5년) 3년 평균수익률의 120퍼센트에서 110퍼센트”로 하향 조정하는 내용임
 - 현행법 제11조는 ‘취업 후 상환 학자금대출’의 금리를 결정함에 있어 매년 물가상승률과 실질금리, 대출원리금 상환율과 재원조달금리 등을 감안하도록 하되, 그 금리는 「국채법」에 따라 5년을 상환 기한으로 하는 국채의 매 학기 시작 직전 3년간 평균수익률의 120퍼센트를 초과하지 않도록 함

- 국회예산정책처의 향후 5년간 경제전망에 따르면, 개정안이 시행되더라도 추가재정소요는 크지 않을 것으로 예상되나, 현시점에서 예상할 수 없는 국내·외 재정·경제상황 변동 등으로 국고채 금리가 변동되는데 따른 재단채 추가발행과 이로 인한 재정소요 발생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으며 이를 현시점에서는 예상하기 어려우므로 비용추계에 한계가 있음
- 최근 5년간 국고채(5년) 평균 금리(직전 3년)와 취업 후 상환 학자금대출 금리는 아래와 같음

[표 2] 학자금대출 금리 및 국고채 금리: 2020년~2024년(학기별)

(단위: %, %p)

		2020		2021		2022		2023		2024
학기		1	2	1	2	1	2	1	2	1
취업후 학자금 대출 금리		2	1.85	1.7	1.7	1.7	1.7	1.7	1.7	1.7
국고채 (5년)	120% (현행)	2.36 (0.36)	2.24 (0.39)	2.06 (0.36)	1.86 (0.16)	1.82 (0.12)	2.04 (0.34)	2.50 (0.8)	2.93 (1.23)	3.44 (1.74)
평균금리 (직전3년)	110% (개정안)	2.17 (0.17)	2.06 (0.21)	1.88 (0.18)	1.71 (0.01)	1.67 (△0.03)	1.87 (0.17)	2.29 (0.59)	2.69 (0.99)	3.16 (1.46)

주: ()안의 %p는 학자금대출금리와 국고채(5년)평균금리와의 차이임

자료: 학기별 취업 후 상환 학자금 대출의 자격요건 등에 관한 고시, 한국은행 경제통계시스템을 바탕으로 국회예산정책처 재작성

- 최근 5년간 취업후 학자금대출금리와 국고채(5년) 직전 3년 평균금리를 비교해볼 때, '22년 1학기 -0.03%를 제외하면 모두 개정안에 따른 110%범위에서 결정됨
- 한편, 국회예산정책처의 경제전망(2023.9.기준)에 따르면 2025년 이후 3년 만기 국고채 금리는 최저 3.0%('29년)에서 최고 3.3%('25년), 10년 만기 국고채 금리는 최저 2.6%('29년)서 3.0%('25년)로 전망되었으며, 이는 취업 후 학자금대출금리가 1.7%로 유지되었던 기간의 5년만기 국고채 금리의 상·하한 범위 내에 포함됨¹⁾²⁾
- 이에 개정안이 시행되더라도 최근 5년간의 취업후 학자금대출금리 결정 추이가 유지될 경우 비용추계기간(향후 5년)³⁾평균금리 상한의 하향 조정을 이

1) 국회예산정책처의 경제전망은 2023.9.기준 자료이며, 이후 공식적인 경제전망은 발표 전임. 또한, 2023년 전망은 중기전망(10년)이었으나, 본 추계서에서는 「의안의 비용추계 등에 관한 규칙」에 따라 향후 5년에 대한 수치만을 인용하였음

2) 5년만기 국고채 금리는 한국은행 경제통계시스템의 수치를 바탕으로 계산하였으며, 2021년 1학기 이후 5년만기 국고채 금리는 최저 1.411%(2021년 1분기)부터 최고 3.924%(2022년 4분기)임

- 유로 취업후 학자금 대출 금리가 조정될 가능성은 높지 않을 것으로 보임
- 다만, 예상할 수 없는 국내·외 재정·경제상황 변동 등으로 인하여 국고채 금리가 급변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으며, 이 경우 개정안 시행으로 인하여 금리 상한이 하향 조정되어 재단채를 추가 발행하여야 하므로 재정지출이 증가할 가능성 또한 배제할 수 없음
 - 이에 개정안은 「의안의 비용추계 등에 관한 규칙」 제3조제1항제3호의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에 해당

Ⅲ. 부대의견

□ 없음

Ⅳ. 작성자

□ 성명

국회예산정책처	분석관	과장
사회비용추계과	정혜승	이진우

□ 대표연락처

성명	전화번호	이메일 주소
정혜승	02-6788-4627	hs0387@assembly.go.kr

3) 「의안의 비용추계 등에 관한 규칙」 제5조④비용추계의 기간은 해당 의안의 시행일부터 5년으로 하되, 재정소요기간이 5년 미만인 경우에는 그 기간으로 한다.(이하 생략)